

일본 채소류 관세 및 수입규제

1. 신선농산물의 수입관세율

품목명	관세번호	관세율(%)	비고
파프리카	0709-60-010	3	명령검사
애호박	0709-93-000	3	
깻잎	0709-99-200	3	명령검사
청고추	0709-60-090	3	명령검사

2. 수입규제 등

- 상기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는 특별히 없으나 과거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복수 발생한 파프리카, 깻잎 및 고추(청, 홍고추), 토마토에 대해서는 현재 수입시마다 매번 검사 후 이상 없을 경우 통관이 가능한 명령검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
 - 잔류농약 검사는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일본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기관별, 성분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1성분당 약 3만엔 정도임
- 파프리카 등 채소류 품목에 대해서도 한일간의 잔류농약 기준치가 다르므로 수출용으로 사전에 관리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
- 깻잎 등의 엽채류의 경우 수출 전에 세척을 하더라도 해충(벌레 및 알 포함)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아 식물검역에서 소독조치시 선도저하 등에 의한 상품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

※ 명령검사 품목관련 정보 별첨 참조